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886호 2023. 3. 3.(금)

www.jeonbuk.go.kr

조 례

O	선다묵노	소데	제5212호	선다둑노의의 의원 공무국외출상에 관한 조례 일무개성조례	. 1
0	전라북도	조례	제5213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0	전라북도	조례	제5214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0	전라북도	조례	제5215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0	전라북도	조례	제5216호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표	6
0	전라북도	조례	제5217호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7
0	전라북도	조례	제5218호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9
0	전라북도	조례	제5219호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0	전라북도	조례	제5220호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0	전라북도	조례	제5221호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
0	전라북도	조례	제5222호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22
0	전라북도	조례	제5223호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25
0	전라북도	조례	제5224호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0	전라북도	조례	제5225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0	전라북도	조례	제5226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31
0	전라북도	조례	제522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	32
0	전라북도	조례	제5228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33
0	전라북도	조례	제5229호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37
0	전라북도	조례	제523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규		칙		
			제 2200 중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40
	건어ㅋㅗ	11 7	All 02033	전에적고 1137 B 0 8 단여센의 전에 전 0 비의 전기계 8 비의	40
	고	ı	시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5		43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59	9호 동곡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60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60)호 동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61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6	l호 동곡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3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69	2호 토지 및 지잣물 세목(변경) 고시(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64

	공	고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37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헤르츠)	68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38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69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384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70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394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71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395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72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406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73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2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74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5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75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6호	공인 등록 공고	77
	도지사 제	기시사항		
0	2023. 2. 24.(금)	간부회의 시 지	- 시사항	78
	시	군		
0		_]계획시설(신홍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1
	익산시 고시 저]2023-47호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0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u></u>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85
0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85 87
0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계획시설사업(금구 중로2-4,소로1-8호선)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85 87
0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계획시설사업(금구 중로2-4,소로1-8호선)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85 87
0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완주군 공고 저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2023-424호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계획시설사업(금구 중로2-4,소로1-8호선)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85 87 92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완주군 공고 저 기	2023-47호 도 2023-34호 도 2023-20호 도 2023-424호 군 E 공고 제2023-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85879293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완주군 공고 저 건라북도교육청	-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2023-424호 군 공고 제2023-	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8587929394
	익산시 고시 저 정읍시 고시 저 김제시 고시 저 완주군 공고 저 건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2023-47호 도시 2023-34호 도시 2023-20호 도시 2023-424호 군 	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93 94 95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8호 공인 등록 및 페기 공고 ······ 98 ○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 99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⑩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2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각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정, 교육·학예행정에 반영가능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3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징계기준(제7조의4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1)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2)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9.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4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4.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 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 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 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의 제목 "(증서 수여)"를 "(증서 수여 및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호 중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제22조"를 "「전라북도립국악 원 운영 조례」 제22조"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전라북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5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 선거공약서를"을 "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을 "공약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자문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고,"를 "대한"으로 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 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의원, 관련"을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6호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을 "시장・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중 "법 제8조제1항 각호"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법 제12조의"로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엔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7호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3.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전북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4.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연합회) ① 전라북도 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군에 설립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방범초소의 설치·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 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
 - 3. 자율방범대원 교육 · 훈련에 필요한 경비
-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8호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수탁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책임행정의 보장성
- 제5조(위탁·대행의 제한)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户

- 제6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되어 있는 사무
 -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 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탁·대행사무명

- 2. 위탁·대행사무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위탁 · 대행사무 내용
- 4. 위탁 ·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5. 위탁 · 대행기간
-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7. 제4조에 따른 위탁 · 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 8. 그 밖에 위탁 ·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 3. 수탁 ·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 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수탁 · 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2. 위탁·대행사무의 목적
 - 3. 위탁 · 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 4. 위탁 대행기간
 - 5.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 6. 위탁 · 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 10. 지도 · 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

- 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제13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 인건비 및 부대경비
 -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3. 사업의 위탁 · 대행에 따른 수수료
 -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②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 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제8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 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라북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

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1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 · 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 2. 수탁 · 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 였을 경우
 - 4. 위탁 ·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되었을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 ·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 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탁 · 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 ·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 · 대

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 워크숍 ·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 대행사무로서 이 조례 시행 후 그 위탁 •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 •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19호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주민이"를 "대해 주민이"로 한다.

제6조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7조 중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을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의견수렴"으로, "일정기간 도 홈페이지"를 "20일 이상 도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홈페이지"를 각각 "누리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를 "도지사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전이라도 해촉"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른"을 "도 외의 다른"으로, "거주하거나"를 "거주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개월 이상 임무"를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 정하는 경우

제18조 앞에 "제4장 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예산학교"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⑪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0호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 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

-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 3.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한 구제조치
 -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 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 2.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도 기반구축사업
- 4.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 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 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1호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라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라북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 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 2. 해양치유자원 현황 · 보전활용 방안
 -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방안
 - 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방안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양치유지구 조성
 -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 연구 및 교육 · 홍보

- 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2호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
- 2. "기업유치"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내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업유치의 기본계획 · 목표 · 추진방향 · 시책 등에 관한 사항
 - 2.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 3. 기업유치의 제반여건 · 전망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
 -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계획은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기준

등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 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 2.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제2886호	도	보	2023년 3월 3일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호	해하다		
	0 4-1.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하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⑪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3호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 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고령농업인 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 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 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 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4호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 관리기관"이란"을 ""관리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시된 자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자"를 "국 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공간정보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을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리·활용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5년마다"로,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간정보 중장기계획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및 변경"을 "내용을 포함하는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리·활용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기반의"를 "기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중 "활성화"를 "활성화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용"을 "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간정보 활성화를"을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활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시계획을"을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리·활용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3. 분야별 공간정보사업의 추진
- 5.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
- 7.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웹접근성 보장 방안
- 8. 지역간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격차 해소 방안

제6조 전단 중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및"을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후단 중 "경우"를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의2를 제9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간정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국가 공간정보정책 변화 및 공간정보데이터의 첨단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법 제 31조에 따라 전라북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 1. 공간정보체계의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
-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체계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④ 협의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 관리기관"을 각각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간객체등록번 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의2(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도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 또는"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보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계획 수립 시 무인비행장치 이용"을 "실시계획에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본문 중 "도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2)의 제목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어서"를 "있어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비공개되거나"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안심사)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후단 중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금액」"을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이용자의 의무)"를 "(사용자의 의무)"로 한다.

부 칙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①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5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조의3"을 "「주거기본법」 제17조"로, "저소득계층을"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 4. "청년"이란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5.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 성원을 말한다.
- 6.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장기임대주택등"을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기임대주택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일시에 상환"을 "상환"으로 한다.

부 칙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 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户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6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초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경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지원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입학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이거나 예산을 책정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8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 2. "도민"이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도민참여"란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 등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과 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4.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이하 "공론화"라 한다)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개발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배심원제 등의 공론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원탁회의"란 일정 수 이상의 도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대상 정책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 6. "공론조사"란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 선정 후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말한다.
- 7. "배심원제"는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선발된 15 명 내외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론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 민과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2. 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교육자 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공론화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도민에게 공론화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 도민은 누구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정보 공개)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법령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도민참여) ① 공론화에 참여하는 도민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 ② 교육감은 공론화 참여자의 구성에 있어 학생, 여성,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공론화의 기능) 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1. 합의를 통한 발전 방안
 - 2. 교육행정의 주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 3.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 4. 교육행정 현안 과제 및 쟁점 사항 등의 해소방안
- 제9조(공론화의 청구 등) 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정책이 공론화를 통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 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이미 종료된 사업
 - ② 교육감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현안에 대하여

제10조의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도민 3,0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3,000명 이상일 경우 청구한 것으로 한다. 단,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

- 제10조(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공론화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청구된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 결정
 - 2. 공론화 의제 선정
 - 3. 공론화 방법의 결정
 - 4.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정수의 2/3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 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 1.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학부모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공론화 전문가
 - 3.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도민
 -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론화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공론화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 제11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정책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하 "학부모 등"이라 한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을 한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숙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 2.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등에 관한 교육
 -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 4. 그 밖에 공론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13조(위탁)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공론화, 제11조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업무 및 제12조에 따른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와 원탁회의, 배심원제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
 - 2. 공론화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29호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 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 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 2호를 말한다.
-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를 말한다.
- 3.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유아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진흥을"을 "활성화를"로 한다. 6.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학교환경교육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⑩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 규칙 제3209호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를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제3조(용어의 정의)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을 "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으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간호사회,「약사법」제11조제1항"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간호사회,「약사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황1·2·3팀"을 "상황1·2·3·4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급상황센터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을 "구급 상황센터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교대"를 "4조 2교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를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로 한다.

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을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세2886오		上		모	2023년	3절	3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u>근 무 일 지</u> (제8조 제1항 제4호 관련)

00	, .	1	61		Δ) /		0.01						결	구	급상황	팀장		센터장
20	년	<u>!</u>	월		일 (요일)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	ユュ	무시간			휴		의 구			- 출	지-	외출		7]1	타		확인
0	· o	L I A TE			연가	병가 공가		공가	특팅	별휴가		Ö	거ㄹ	(비상근		근무)		(서명날인)
														+				
														+				
														+				
						의	显 :	지 도 의	 김 사	근두	 구 혀	<u></u> 홧						
						Ť						Ť						
						+						-				+		
	관							 추 진	<u></u> 시 저								<u></u>	<u> </u>
	리							1 2	2 7							+	Ľ	게 된 1
	업	[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								건								
	무																	
일		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구	분		계		응급		질			병 원			급차	7]1		오인 및
처					- "		지	도	상	담	Ç	간내		출동	-연결	상덕	計	장난 등
리	상	겨 119구																
사	황	119구 이송 ⁹						+										
항	。 실	의료																
	_	일빈																
		외국	수인															
		12	9															
		7] 1	타															
71	타																	
	다 업무																	
	. ㅂ T 사항)																	
	1 1 0/																	

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지사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 면 적: 152,596 m²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고창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기업입주에 대비하여 직·주 근접 실현 및 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공간 마련
 - 고창군 도시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개발연계성에 근거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개발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 고시일(2023년 3월) ~ 2025년 12월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보

	구 분	면 적(m')	구성비(%)	비고
	합 계	152,596	100.0	
	소 계	81,436	53.4	
주거	단독주택	6,130	4.0	
용지	공동주택	69,187	45.3	
	준주거(근생)	6,119	4.0	
	업무시설용지	8,181	5.4	
	커뮤니티시설	345	0.2	
	소 계	62,634	41.0	
	도 로	25,428	16.7	
	주 차 장	1,839	1.2	
도시	공공청사	6,554	4.3	
기반	공원·녹지	28,795	18.9	
시설	공 원	21,889	14.3	
	녹 지	6,906	4.5	
	<u>가스공급시설</u>	18	0.0	
	저류시설	(3,000)	-	공원 내 중복결정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m')	용적률 (%)	전용면적 (m')	평균주택 규모(m')	호 수 (호)	인 구 (인)	비고
합 계	75,317		-	-	1,217	2,556	
단독주택	6,130	180이하	-	-	19	40	
공동주택	69,187	-	-	=	1,198	2,516	
임 대	13,843	200이하	60 이하	90	308	647	
분양1	25,262	200이하	60~85	115	367	771	
분양2	30,082	200이하	60~85	115	523	1,098	·

보

- 기반시설계획
- 1) 교통시설
- 가) 도 로

[도로계획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m²)	수	(m)	(m²)	수	(m)	(m')	수	(m)	(m²)
합	계	18	3,311 (1,891)	40,486 (25,428)	1	428	9,794	6	664 (465)	8,773 (6,958)	11	2,219 (998)	21,919 (8,676)
	계	14	3,248 (1,828)	40,174 (25,117)	1	428	9,794	6	664 (465)	8,773 (6,958)	7	2,156 (935)	21,607 (8,365)
일반 도로	중로	9	2,744 (1,523)	36,423 (23,181)	1	428	9,794	4	404	6,219	4	1,912 (691)	20,410 (7,168)
	소로	5	504 (305)	3,751 (1,936)	-	-	-	2	260 (61)	2,554 (739)	3	244	1,197
보행자전	계	4	63	311	-	_	-	-	-	I	4	63	311
용도로	소로	4	63	311	_	_		-	_	I	4	63	311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나) 주차장

구 분	위치	면 적(m')	비고
계	-	1,839	
주차장1	고창읍 덕산리 188-1 일원	933	
주차장2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906	

2) 공간시설

가) 녹 지

구 분	위 치	면 적(m')	비고
계	-	6,906	
완충녹지1	고창읍 덕산리 118 일원	407	
완충녹지2	고창읍 덕산리 119 일원	1,493	
경관녹지1	고창읍 덕산리 128 일원	1,029	
경관녹지2	고창읍 덕산리 210 일원	3,977	

나) 공 원

구 분	위 치	면 적(m²)	비고
계	-	21,889	
근린공원	고창읍 덕산리 176 일원	11,992	
소공원1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8,312	저류지 중복결정
소공원2	고창읍 덕산리 208-3 일원	1,585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구 분	위 치	면 적(m²)	비고
가스공급설비 	고창읍 덕산리 171-6 일원	1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구 분	위 치	면 적(m²)	비고
공공청사	고창읍 덕산리 189-5 일원	6,554	

5) 방재시설

가) 저류시설

구 분	위 치	면 적(m²)	비고
저류시설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3,000	소공원1 중복결정

6) 기타 기반시설

가) 상수도

구 분	상수공급용량(m'/일)	비고
일최대급수량	1,049	

나) 하수도

구 분	오수처리용량(m'/일)	비고
일최대오수량	961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고창군 건설도시과(☎ 063-560-2563)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파트 (☎ 063-280-7534)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_ ,,	도면표시				면 적(m')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1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	증) 152,596	152,596	

○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_ ,,	도면표시	- A -1	A) 3		면 적(m')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_	고창 덕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ı	증) 152,596	152,596	

12.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 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비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 063-560-2563)

보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지	대지			면 2	덕(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총 계		218필	지	196,667	152,596					
1	고창	덕산	16	납	1,792	1,792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	고창	덕산	17-1	전	374	374	연*성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86 온천마을제일 아파트 **			
3	고창	덕산	17-3	전	873	842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	고창	덕산	17-18	답	227	109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	고창	덕산	17-19	전	62	14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	고창	덕산	34-5	답	23	2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 타운2길 **			
7	고창	덕산	34-6	답	2,658	2,658	박*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	고창	덕산	34-7	답	53	5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 타운2길 **			
9	고창	덕산	34-8	답	118	118	고창군				
10	고창	덕산	34-9	답	24	24	고창군				
11	고창	덕산	100	답	1,031	37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12	고창	덕산	100-3	답	31	25	고창군				
13	고창	덕산	100-7	답	1500	1	국(국토해양부)				
14	고창	덕산	100-9	도	165	20	고창군				
15	고창	덕산	101-3	잡	1,219	1,21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읍내리 518-5 덕산 진흥하이츠 **	근저당권	고창**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6	고창	덕산	101-5	답	106	106	고창군				
17	고창	덕산	101-6	답	16	16	고창군				
18	고창	덕산	102	답	1,628	1,628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			
19	고창	덕산	102-1	답	67	67	고창군				
20	고창	덕산	111-3	도	73	19	고창군				

연	소지	H지	-3 -3	_1 =	면 조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21	고창	덕산	113-2	대	43	42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 면 신림로 **			
00		티기	115	71	0775	075	박*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22	고창	덕산	115	잡	675	675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23	고창	덕산	115-4	도	69	69	고창군				
24	고창	덕산	115-12	잡	18	17	국(건설교통부)				
25	고창	덕산	115-32	잡	31	31	국(국토교통부)				
00	a)	17.	116	-31	001	001	박*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26	고창	덕산	116	창	661	661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지상권	타이어 주식회사	테헤란로**
07	- 3	-1.1	110.1	11	070	050	박*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27	고창	덕산	116-1	대	378	378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지상권	타이어 주식회사	테헤란로**
28	고창	덕산	116-2	도	23	23	국(건설부)				
29	고창	덕산	116-3	도	417	24	국(건설부)				
30	고창	덕산	116-4	도	60	27	국(건설교통부)				
31	고창	덕산	116-5	대	68	68	국(건설교통부)				
32	고창	덕산	117-2	도	3	3	고창군				
33	고창	덕산	118	전	1,166	1,166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럼 면 신림로 **			
34	고창	덕산	118-2	전	14	3	국(국토교통부)				
35	고창	덕산	119-2	도	182	182	고창군				
36	고창	덕산	119-3	답	3,354	3,354	정*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 주로**	근저당권	고창** 조합	고창군 고창읍 토 릿골로 **
37	고창	덕산	119-4	답	10	10	고창군				
38	고창	덕산	119-5	답	23	23	고창군				
39	고창	덕산	119-6	도	209	209	고창군				

도

연	소지	II지	-1 -2	-1	면 2	(m')	র		관 계	인	
번	욥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40	고창	덕산	120	고나	2 050	2 950	유한회사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앙로 **	근저당권	흥덕**	전라북도 고창군
40	시	탁산	120	잡	3,850	3,850	유한회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앙로 **	지상권	조합	홍덕면 홍덕초등김
41	고창	덕산	120-2	답	44	44	고창군				
42	고창	덕산	120-3	도	116	116	고창군				
43	고창	덕산	121-2	답	120	120	고창군				
44	고창	덕산	122	답	2,090	2,090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	고창	덕산	122-1	답	12	12	고창군				
46	고창	덕산	123	답	2,549	2,549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7	고창	덕산	124	답	1,089	1,08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읍내리 518-5 덕산 진흥하이츠 **			
48	고창	덕산	124-1	답	151	151	고창군				
49	고창	덕산	125	답	2,083	464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읍내리 518-5 덕산 진흥하이츠 **			
50	고창	덕산	125-1	답	3	3	고창군				
51	고창	덕산	126	답	2,423	192	성*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 랑역로 **			
52	고창	덕산	126-2	답	33	33	고창군				
53	고창	덕산	128	답	7,289	322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읍내리 518-5 덕산 진흥하이츠 **		고창** 조합	고창군 고창읍 (
54	고창	덕산	129	답	1,616	1,091	김*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55	고창	덕산	129-1	답	1,686	1,033	변*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56	고창	덕산	129-2	답	272	272	고창군				
57	고창	덕산	129-3	답	83	83	고창군				
58	고창	덕산	134-2	도	10	8	김*이	정읍시 수성동 948-9 두산빌라 **	근저당권	정읍** 금고	정읍시 수성동 *
59	고창	덕산	135-1	답	4,878	4,878	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근저당권	고창** 조합	고창군 고창읍 J 릿골로 **

연	소지	·기			면 2	d (m')	소	: 유 자		관 계 약	1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명	주 소
60	고창	덕산	135-2	도	132	132	김*수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61	고창	덕산	135-3	도	33	33	고창군				
62	고창	덕산	135-4	도	104	104	고창군				
63	고창	덕산	136-3	도	106	3	고창군				
64	고창	덕산	136-4	도	162	116	고창군				
65	고창	덕산	136-5	대	355	5	김*순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66	고창	덕산	138	답	956	44	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 유동 **			
67	고창	덕산	138-1	도	6	6	고창군				
68	고창	덕산	140-2	도	99	14	고창군				
	-						김*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 백동3길 **			
69	고창	덕산	166	답	3,988	3,988	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 림로29길 **			
70	고창	덕산	166-1	전	334	334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김*삼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김*만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71	고창	덕산	166-2	전	50	50	김*성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김*열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김*수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72	고창	덕산	166-19	답	26	26	고창군				
73	고창	덕산	166-20	답	26	26	고창군				
74	고창	덕산	167	답	60	60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5	고창	덕산	167-1	답	135	135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76	고창	덕산	168	답	73	73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연	소지	내지			면 조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율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77	고창	덕산	169	전	50	50	류*선	-			
78	고창	덕산	170	전	165	165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9	고창	덕산	171	답	1,306	1,306	유*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기압류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박 강남대로 **
80	고창	덕산	171-1	도	169	169	박*기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1	고창	덕산	171-2	전	60	60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2	고창	덕산	171-3	전	3,402	3,402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3	고창	덕산	171-6	임	1,463	1,463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옥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월곡로 **			
							강*자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84	고창	덕산	171-7	임	1,888	1,888	강*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강∗숙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			
							강*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			
85		디치	179	r-ì.	1.249	1 249	오*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근저당권	고창**	전라북도 고칭
80	고창	덕산	172	탑	1,342	1,342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지상권	조합	고창읍 읍내리
86	고창	덕산	172-1	목	1,995	1,995	박* 영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덕산리 **			
87	고창	덕산	172-2	전	621	621	윤*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덕산리 **			
88	고창	덕산	172-3	대	231	231	오*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월곡로 ••			
							안*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			
89	고창	덕산	172-4	답	1,520	1,520	엄≉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엄*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 **			

연	소기	NA.			면 조	d (m')	: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명	주 소
90	고창	덕산	172-5	답	162	162	김*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평화동2가 180 두 산 경복궁 아파트 **			
91	고창	덕산	172-6	전	2,716	2,716	ᆄ*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92	고창	덕산	172-7	답	17	17	고창군				
							안*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			
93	고창	덕산	173	답	78	78	엄*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엄∗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 **			
94	고창	덕산	173-1	답	24	24	고창군				
95	고창	덕산	174	전	160	160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읍내리 **			
96	고창	덕산	174-1	전	207	207	고창군				
97	고창	덕산	175	답	3,666	3,666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			
98	고창	덕산	176	답	3,901	3,901	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99	고창	덕산	177-1	답	937	937	윤*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00	고창	덕산	177-2	답	466	466	윤*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01	고창	덕산	177-3	답	203	203	고창군				
102	고창	덕산	178	전	642	642	윤*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103	고창	덕산	178-1	전	198	198	고창군				
104	고창	덕산	179	댭	3,977	3,977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 홍하이츠 **			
105	고창	덕산	180	답	3,603	3,603	유*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106	고창	덕산	180-1	답	3,755	3,669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07	고창	덕산	181-1	답	2,249	2,249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근저당권	고창** 조합	전라북도 고칭 고창읍 보릿골

연	소지	N 지			면정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108	고창	덕산	181-2	도	40	40	고창군				
109	고창	덕산	181-3	도	13	13	고창군				
110	고창	덕산	181-4	도	43	43	고창군				
111	고창	덕산	180-5	도	25	25	고창군				
112	고창	덕산	182-1	잡	1,583	1,583	김*호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 면 형제동길 **	근저당권	양*경	전라북도 고창 고창읍 월곡로
113	고창	덕산	182-2	도	139	139	김∗수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114	고창	덕산	182-3	도	96	96	고창군				
115	고창	덕산	182-4	도	248	248	고창군				
116	고창	덕산	183-2	도	60	60	고창군				
117	고창	덕산	184	답	238	23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18	고창	덕산	184-1	대	588	58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19	고창	덕산	184-2	답	224	224	고창군				
120	고창	덕산	184-3	댭	49	49	고창군				
121	고창	덕산	184-4	도	34	34	고창군				
122	고창	덕산	185	전	598	598	०]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123	고창	덕산	185-1	전	41	41	고창군				
124	고창	덕산	185-2	전	41	41	고창군				
125	고창	덕산	185-3	전	497	497	고창군				
126	고창	덕산	186	답	4,479	4,479	া* ত্ৰ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 면 낙산로 **			
127	고창	덕산	187	전	217	217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128	고창	덕산	187-1	전	24	24	고창군				
129	고창	덕산	188-1	전	775	775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백양길 **			
130	고창	덕산	188-2	도	10	10	고창군				
131	고창	덕산	188-3	전	237	237	고창군				

도

연	소지	내지	-1 -11	_1	면 2	(m')	소	유자		관 계	인
번	윱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132	고창	덕산	188-4	전	9	9	고창군				
133	고창	덕산	188-5	도	126	126	고창군				
134	고창	덕산	189-5	대	4,713	4,713	박*열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 면 애향갯벌로 **	근저당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 세종대로 **
135	고창	덕산	189-6	대	8,201	8,20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 로 **			
136	고창	덕산	189-10	대	637	637	허*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 **			
137	고창	덕산	189-11	답	2,245	2,245	김 *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138	고창	덕산	189-12	도	46	16	국(건설부)				
139	고창	덕산	189-24	전	253	253	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 **			
140	고창	덕산	189-31	도	312	11	고창군				
141	고창	덕산	189-34	도	50	13	국(국토교통부)				
142	고창	덕산	189-35	도	100	4	국(건설부)				
143	고창	덕산	189-39	도	1	1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83길 **			
144	고창	덕산	189-40	도	163	16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83길 **			
145	고창	덕산	189-42	도	153	15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83길 **			
146	고창	덕산	189-43	임	92	92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산대로83길 **			
147	고창	덕산	189-44	도	120	120	김*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근저당권	이*석	고양시 덕양구 축동 **
									압류	고창군	
148	고창	덕산	189-45	전	256	3	고창군				
149	고창	덕산	189-46	대	757	40	고창군				
150	고창	덕산	189-47	답	185	19	고창군				
151	고창	덕산	189-49	답	258	258	고창군				
150	3i	답 개	907.0	rì	500	FAG	조*창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근저당권	고창**	고창군 고창읍
152	고창	덕산	207-2	답	503	503	이*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지상권	금고	내리 **

연	소지	대지			면 조	d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숍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명	주 소
150	_ =1	-1.11	007.0		500	500	조*창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근저당권	고창**	고창군 고창읍
153	고창	덕산	207-3	대	500	500	이*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지상권	금고	내리 **
154	고창	덕산	207-4	도	93	52	고창군				
155	고창	덕산	207-5	도	86	46	고창군				
156	고창	덕산	207-6	도	882	75	고창군				
							송*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57	고창	덕산	207-7	노	92	92	송*창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송*식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송*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58	고창	덕산	207-8	도	72	72	송 *창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송*식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조∗창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근저당권	고창**	고창군 고창읍
159	고창	덕산	207-9	전	608	608	이*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지상권	금고	내리 **
160	고창	덕산	208-1	전	3,643	3,643	김*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61	고창	덕산	208-3	전	1,552	1,552	박* 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62	고창	덕산	208-4	대	91	91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주식회사 ** 은행	전라북도 전주 덕진구 백제대.
163	고창	덕산	208-5	도	344	234	고창군				
164	고창	덕산	208-6	도	108	108	고창군				
1.0=	-	m -:	000 =		,	,	송*자	서울시 중구 황학동 *			
165	고창	덕산	208-7	또	471	471	송*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66	고창	덕산	208-8	도	72	72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연	선 소재지		지 버 :		면정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욥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	성 명	주 소
167	고창	덕산	208-9	도	96	96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168	고창	덕산	208-10	대	649	649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덕산리 **	근저당권	고창군 **조합	전라북도 고창급 고창읍 덕산리 *
169	고창	덕산	208-11	전	1,237	1,237	박*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 영선로 **			
170	고창	덕산	208-12	전	742	742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덕산리 **	근저당권 지상권	고창군 **조합	전라북도 고창는 고창읍 읍내리 (
171	고창	덕산	209	답	2,392	2,392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72	고창	덕산	209-1	대	5513	5507	고창군				
173	고창	덕산	209-2	도	48	48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74	고창	덕산	209-3	전	1,101	1,101	염 * 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887 아중롯데아파 트 **			
					·		학교법인 **학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			
175	고창	덕산	209-4	하	409	246	연 * 영	월곡리 586 온천마을 제일 아파트			
							학교법인 **학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76	고창	덕산	209-6	묘	542	542	고창군				
177	고창	덕산	210	대	658	658	안*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고창** 조합	전라북도 고창; 고창읍 보릿골로
178	고창	덕산	210-1	또	207	207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179	고창	덕산	210-2	도	393	393	국(기획재정부)				
180	고창	덕산	210-3	전	2,645	2,645	유*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남구2길 **	근저당권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 [~] 통일로 **
181	고창	덕산	210-4	전	1,531	1,531	유*열 고창군 고창읍 덕신 리 **				
182	고창	덕산	210-5	임	182	182	엄*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83	고창	덕산	210-6	임	337	337	국(기획재정부)				
184	고창	덕산	210-7	전	1,855	1,855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동동로 **			

연	소지	내지			면 조	(m¹)	ব	<u>-</u> 유 자	관 계 인			
번	욥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명	- 주 소	
185	고창	덕산	210-8	임	79	79	변*광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86	고창	덕산	210-11	전	18	18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187	고창	덕산	210-14	전	102	102	고창군					
188	고창	덕산	210-15	대	40	40	고창군					
189	고창	덕산	210-16	답	1,927	1,927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190	고창	덕산	211-1	대	1,725	1,72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지상권	고창부안**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191	고창	덕산	212	대	1,085	1,085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지 상 권	주식회사**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192	고창	덕산	212-1	도	4	4	고창군					
193	고창	덕산	212-2	전	196	196	고창군					
194	고창	덕산	212-3	대	460	460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195	고창	덕산	213	답	86	86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				
196	고창	덕산	214	대	314	314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권	고창** 조합	전라북도 고창등 고창읍 읍내리 *	
197	고창	덕산	214-3	답	19	5	이*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덕산리 **				
198	고창	덕산	215-2	답	110	109	박*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읍 중거리당산로 **				
199	고창	덕산	2016-3	도	201	95	고창군					
200	고창	덕산	218-2	답	36	36	박*인	고창군 성내면 산림 리 **				
201	고창	덕산	218-3	도	162	1	고창군					
202	고창	덕산	500-2	구	3672	117	국(농림부)					
203	고창	덕산	501	구	8655	3012	국(농림부)					
204	고창	덕산	505	도	350	265	국(건설부)					
205	고창	덕산	507	도	43	43	국(건설부)					
206	고창	덕산	508	도	93	93	국(건설부)					

연	소지	·기	-3 -3	_1 =	면 2	d (m')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숔	리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주 소
207	고창	덕산	509-1	도	101	101	국(건설부)				
208	고창	덕산	509-4	도	10	3	국(건설부)				
209	고창	덕산	510	도	228	228	국(건설부)				
210	고창	덕산	511	구	1910	1874	국(농림부)				
211	고창	덕산	511-1	구	268	21	국(농림부)				
212	고창	덕산	512	도	2886	3	국(건설부)				
213	고창	덕산	산37-2	학	397	130	국(기획재정부)				
214	고창	덕산	산39	ᅜ	2162	1425	고창군				
215	고창	덕산	산40-1	임	893	893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			
216	고창	덕산	산40-4	임	209	209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7	고창	덕산	산47-2	임	7,177	835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218	고창	덕산	산48-2	임	4,760	453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전라북도 고시 제2023-59호

동곡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동곡천의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하천	의 구집	<u>,</u> }-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2	종 점	하천 연장	결정 (변경)일
		ОН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近か (km)	(단정)원
당초	E 7 3	-1 H)	전북	정읍	산외	동곡리 526번지선	전북	정읍	산외	동곡리 동진강(지방)합류점	3.00	2009.05.08. (전북 제2009-137호)
변경	동곡천	지방	전북	정읍	산외	동곡리 526-1번지선	전북	정읍	산외	동곡리 49-9번지선 동진강(지방)합류점	3.01	2023.03.03.

2.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하천 구간의 조사 및 측량결과에 따른 지 정(변경) 전라북도 고시 제2023-60호

동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동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스케먼	a) a) m	하천	하 :	천 의 구 간	연장	n] →	
수계명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km)	비고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526번지선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동진강(지방)합류점	3.00	전북260호 (1982.10.11.)	
동진강	동곡천	지방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526번지선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동진강(지방)합류점	3.00	전라북도 고시 제2009-137호 (2009.05.08.)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526-1번지선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49-9번지선 동진강(지방)합류점	3.01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수자원	기준	저수량	ਜੰ	m³)	손실량	
하선병	면적 (km²)	총량 (백만m³)	갈수량 (m³/s)	(m³/s)	홍수기	평상시	계	(백만m³)
동곡천	4.06	5.32	0.0138	0.0249	1.99	1.03	3.02	2.30

4. 정비계획

	하천연장	하천기본	계획(km)		하	천정비(km)		
하천명	야선턴(km)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비고
동곡천	3.01	3.01	-	6.02	-	2.86	3.16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젂명	유역 면적	계획 규모	기 본 홍수량		통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9120	1 20,140	(km²)	(년)	(m³/s)	하도분담	유역분담	시설별 홍수량 (m³/s)
	동곡천 종점 (No.0+000)	4.06	50	66	66	_	_
	동곡교 지점 (No.1+018)	3.54	50	62	62	_	_
동곡천	동곡6교 지점 (No.1+668)	3.17	50	60	60	-	_
	동곡11교 지점 (No.2+508)	2.07	50	41	41	-	-
	동곡천 시점 (No.3+013)	1.23	50	24	24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누가 거리	계 획 홍수량	계 획 홍수위	계획 규모		·폭 n)	기설계 (EI	테방고 m)	비고
	(No.)	(m)	(m³/s)	(EL.m)	(년)	현재	계획	좌안	우안	
	0+000	0	66	47.13	50	16	42	48.13	47.90	동곡천 종점
	1+018	1,018	62	61.56	50	14	18	63.14	63.04	동곡교 지점
동곡천	1+668	1,668	60	75.69	50	10	14	76.81	76.81	동곡6교 지점
	2+508	2,508	41	96.53	50	10	10	98.35	98.35	동곡11교 지점
	3+013	3,013	24	117.09	50	6	6	117.59	117.59	동곡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²)
	0+000~3+013	좌안	복원지구	3,013	21,460
	0+000~1+120	우안	복원지구	1,120	18,248
동곡천	1+720~1+920	우안	복원지구	200	4,481
중국선	2+100~3+013	우안	복원지구	913	16,440
	1+120~1+720	우안	일반보전지구	600	6,311
	1+920~2+100	우안	일반보전지구	180	1,255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정읍 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61호

동곡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청(물통합관리과), 정읍시청(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동곡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3. 3. 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크리퍼	하	천 구 간		면적	결정
하천명	기 점	종 점	거리 (km)	(m²)	사유
	6개 지구 (좌안 - 3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6.026	68,195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89-7번지선 (No.1+040)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49-3번지선 (No.0+000)	1.040	9,70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414-3번지선 (No.2+340)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89-7번지선 (No.1+040)	1.300	8,57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521번지선 (No.3+013)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414-3번지선 (No.2+340)	0.673	3,182	기본계획 재수립
동곡천	좌인	부 소계	3.013	21,460	3개 지구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93-1번지선 (No.1+015)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755-25번지선 (No.0+000)	1.015	20,324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55번지선 (No.2+126)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93-1번지선 (No.1+015)	1.111	21,92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526-1번지선 (No.3+013)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55번지선 (No.2+126)	0.887	4,491	기본계획 재수립
	우인	부 소계	3.013	46,735	3개 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라북도 고시 제2023-62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전라북도 고시 제2021-303(2021. 10. 1.)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지방도 709호선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일

1. 사업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노선명 : 지방도 709호선

4. 사업기간 : 2021. 1월 ~ 2024. 12월 5.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따로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 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Al ul		토지 소재	지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	인	비고
연번	분현	할전	분할후	목	(m²)	(m²)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꼬
1	성산면 둔덕리	210-1	210-4	답	101	2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67-14	조호열			
2	성산면 둔덕리	211	211-4	전	1123	87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41	양승철			
3	성산면 둔덕리	212-1	212-7	답	2278	111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814-3	정길수			
4	성산면 둔덕리	212-2	212-9	답	1457	120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	전화자			
5	성산면 둔덕리	524	524	도	2529	1573		농식품부			
6	성산면 둔덕리	233-2	233-2	답	459	459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2길 10(수송동)	양희철			
							전라북도 군산시 설립2길 33-1,101동204호(소룡동,금강골드빌아파트)	양인호			
7	성산면 둔덕리	233-5	233-10	수	231	13		환경부			
8	성산면 둔덕리	233-3	233-8	수	633	219		환경부			
			233-9	수	633	25		환경부			
9	성산면 둔덕리	233-1	233-7	유	1881	1224		농식품부			
10	성산면 둔덕리	525	525-4	구	24548	244		농식품부			
11	성산면 둔덕리	산92-1	산92-3	구	491	147		군산시			
12	성산면 둔덕리	산92	신92-2	임	20335	9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128	남원양씨허 공파구석물 종중			
13	성산면 둔덕리	249-4	249-4	구	154	154		군산시			
14	성산면 둔덕리	249-1	249-5	답	1840	1117	충청북도 사천군 장항읍 화천리 431 엘지 니꼬아파트 103동 403호	신향란			
15	성산면 둔덕리	249-2	249-7	답	572	257	충청북도 사천군 장항읍 화천리 431 엘지 니꼬아파트 103동 403호	신향란			
16	성산면 둔덕리	250	250-3	답	2797	63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58	양인영			
17	성산면 둔덕리	283-4	283-18	답	2053	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4-3	석상문			
18	성산면 둔덕리	283-10	283-19	답	749	34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4-3	석상문			
19	성산면 둔덕리	283-5	283-5	대	259	25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4-3	석상문			
20	성산면 둔덕리	283-12	283-12	수	63	63		환경부			
21	성산면 둔덕리	283-3	283-17	답	853	5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4-3	석상문			
22	성산면 둔덕리	281-4	281-4	수	50	50		환경부			

도

ادرام	토지 소재지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그	
연번	분	할전	분할후	목	(m²)	(m²)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23	성산면 둔덕리	283-11	23-20	수	7	2		환경부			
24	성산면 둔덕리	281-5	281-6	수	228	138		환경부			
25	성산면 둔덕리	282-8	282-12	수	140	69		환경부			
26	성산면 둔덕리	282-3	282-11	전	217	51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2길 10(수송동)	양희철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33-1,101동204호(소룡동,금강골드빌아파트)	양인호			
27	성산면 둔덕리	282-2	282-10	답	167	88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2길 10(수송동)	양회철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33-1,101동204호(소룡동,금강골드빌 아파트)	양인호			
28	성산면 둔덕리	283-15	283-21	답	1323	6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4	이석희			
29	성산면 둔덕리	279-6	279-22	답	58	1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259	박상규			
30	성산면 둔덕리	234-2	234-6	답	522	177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2길 10(수송동)	양희철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2길 33-1,101동204호(소룡동,금강골드빌아파트)	양인호			
31	성산면 둔덕리	246	246-15	대	1209	43	전라북도 군산시 동신영길 77(신영동)	김진숙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33, 102동 102호	채송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33, 102동 101호	임태혁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33, 101동 202호	최용철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33, 101동 201호	양인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8-14, 355-42 송죽빌딩 2-5층	사단법인한 국해비타트			
32	성산면 둔덕리	246-3	246-16	수	514	258	000 12 0 12 0 2 00	환경부			
33	성산면 둔덕리	246-4	246-4	수	146	146		환경부			
34	성산면 둔덕리	250-2	250-5	수	186	13		환경부			
35	성산면 문덕리	283-13	283-13	수	104	104		환경부			
36	선 성 산 문 덕리	283-14	283-14	수	102	102		환경부			
37	선산면 문덕리	279-2	279-20	토	109	85		국토교통부			
38	선산면 문덕리	279-3	279-3	도	1278	21		전라북도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공사명 : 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ارد لم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물건종류) 지적 (구조 및 규격, n	지적	편입면적. (수량, m²)	소유자		이해 관계인		ul =		
연변				(구소 및 규격, m')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비고		
1	군산	성산	둔덕	283-21	메쉬펜스		60m	군산시 삼학5길 13	이윤영			
					철쭉		13주					
					무궁화		1주					
					꾸지뽕나무		20주					
					사과나무		3주					
2	군산	성산	둔덕	283-19	느티나무		800주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34-3	석상문			
				283-5								
				283-10								
3	군산	성산	둔덕	246-15	벚나무		1주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11-33	김현웅			
					매실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4	군산	성산	둔덕	233-7	소나무		17주	군산시 하나운로 20	양기술			
					감나무		3주					
					앵두나무		1주					
					느티나무		2주					
5	군산	성산	둔덕	524	이팝나무		1주					
					주목		2주					

전라북도 공고 제2023-37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헤르츠)

「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3년 3월 3일

1. 허가 번호: 제2023-04호

2. 법 인 명: 사단법인 헤르츠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90 대민빌딩 5층

4. 대 표 자 : 손 성 한

5. 허가연월일 : 2023. 02. 22

6. 설립 목적: 전라북도 클래식 연주를 포함하여 예술단체들과의 협업공연 및 창

작공연 등을 선보이고 도내 예술인들의 연주력 향상 등 클래식 영

향력 확대에 이바지

전라북도 공고 제2023-38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 전 라 북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09-1-전라북도 - 59호

2. 단체명칭: 전북지구청년회의소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4길 11 (효자동1가)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김광현

○ 생 년 월 일 : 1982.12.25.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길 57-33 (상세주소 생략)

5. 주된 사업

○ 지역사회개발, 지도역량개발, 세계화의 우정

6. 변경 내용

구 분	주 요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대표자	김태인 (1971)	김광현 (1982)	

7. 허가(변경)일자 : 2023. 2. 28.

전라북도 공고 제2023-384호

부동산개발업 폐업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개발 업 말소된 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 폐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전 라 북 도 지 사 2023년 3월 3일

상호 및 대표자	말소연월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유)다홍건설	2023.2.24.	전북11000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85	사업실적
(조희곤)		(210114-0013313)	(이서면 은교리)	부 진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394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3년 3월 3일

법 인 명: 사단법인 전북예술문화원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떡전로 14

3. 대표자성명 : 정영숙

4. 설립 목적: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전반(음악, 문학, 미술,

무용, 연극, 문화콘텐츠)의 연구, 공연, 전시 및 강좌, 지방대학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 기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3조, 제4조)

6. 변경허가연월일 : 2023. 2. 25.

전라북도 공고 제2023-395호

전라북도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일

구 분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예산안 (1건)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과 박혁 주무관 280-3015)
조례안 (1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장선경 주무관 280-2073)

전라북도 공고 제2023-406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공고

「민법」 제4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 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 3. 3. 전 라 북 도 지 사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어독스

2. 허가번호 : 제2021-49호

3.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중앙로 175

4. 대 표 자 : 엄 지 영

5. 주된사업

-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임시 보호 및 입양 활동
- 해외 동물구조 단체와의 교류 및 해외 입양
- 올바른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국내 동물구조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6. 변경사항 : 임원 변경(재임 이사 변경)
- 7. 변경허가일자 : 2023. 2. 28.

사단법인 어독스 정관변경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장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제8장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된다.
이사장 엄지영	이사장 엄지영
이사 김주영	이사 조윤미
이사 엄춘영	이사 엄춘영
이사 정영철	이사 정영철
이사 손민정	이사 손민정
이사 임희진	이사 임희진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2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지사

■ 공고사항

1. 허가번호 : 제2016-25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문화경제포럼3. 소 재 지 : 군산시 외산3길 17-1

4. 대 표 자 : 이충섭

5. 설립목적 :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들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지식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활용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6. 변경 허가사항: 정관변경(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4호
- (변경후) 군산시 외산 3길 17-1
- 7. 변경 허가일자 : 2023. 2.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5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3년 3월 3일

- 1. 허 가 번 호: 제2015-9호(2015. 2. 16.)
- 2. 법 인 명: 사단법인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 3. 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267-1
- 4. 변경 허가일 : 2023. 3. 3.
- 5. 정관변경 주요내용(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기존) 이사 5인 → **(개정) 이사 6인**
 - 제15조(임원의 선출)
 - (기존) 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
 - → (개정) 본 업무 담당과장 순창군 2명, 남원시 1명
- 6. 주요사업
 - 공선출하회에 속해있는 농가의 농작업 일자리 제공 및 알선사업
 - 취약계층의 농작업 일자리 제공 및 알선사업
 - 농작업 출퇴근 운송 및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농작업안전용품 지원사업
 - 회원의 농작업 교육 및 생활개선,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고령.영세인등의 농기계작업 지원

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1. 이사장 : 1인	1
2. 이 사 : 5인	2. 이 사 : <u>6인</u>
3. 감 사 : 2인	3
제15조(임원의 선출) ①~② (생략)	제15조(임원의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출자회원 임원과 당연직 임원으로 구분하	③ (현행과 같음)
고,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하는 자는 총회의 선임	
없이 그 재임기간 중 당연히 임원(이하 "당연직 임	
원"라 한다)이 된다. 1. 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	
1. <u>군성군·급천시 본 업무 담당과정</u> 2. 임실군·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 중 1명을	1. 본 업무 담당과장 순창군 2명, 남원시 1명
당연직으로 총회에서 선임한 자.	2. (현행과 같음)
④ (W 략)	
	④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공고 제2023-416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3년 3월 3일

- □ 공인의 등록
- 1. 공인 등록 사유 :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 2. 공인 등록일 : 2023년 3월 3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ପି ଖି
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화학119구조대장인	군산소방사 화학119 구소대장인
"	군산소방서화학119구조대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소방사 화학119 구조대일상 명비출납원인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2. 24.(금) 17: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 용									
2023- 8	아태마스터스, 세계잼버리대회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아태마스터스) '23.5.12.~20./26개 종목 10,000여명 방문 - IOC 공인 생활체육 아시안게임, 4년 주기 개최(1회 말레이시·○ (세계잼버리) '23.8.1.~12./170여개국 5만여명 방문 - 일일방문객 프로그램(기간중 7일), 2만1천명 예상(3천명/1일) 	아, 2회 전북)								
	○ 아태마스터스대회 D-77일, 세계캠버리 D-158일 남음:(2.24기준) - 대회기간 국내외 많은 참가자 및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대회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주관: 관광산업과 /협조: 자치행정과, 체육										
	당면·현안업무	○ 세계잼버리대회 종료 후 활용 방안 모색 -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인프라 등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실국 협업을 통해 전고 미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박바리 자산 활용 아이디어를 내 (주관 : 해당 실·국)								
		○ 동남아 국외출장 후속조 치 추진									
		주요내용 • 전북도-닥락성 계절 근로자 관련 체계 구축 • 전북-닥락성 간 직업교육 교류 확장 추진 • 도내 유턴기업 지원 정책 안내 요청(인도네시아) • 베트남 통상거점센터 활용 연결 추진 • 베트남 한국상품 전시장 활용 도내 중소기업 진출 지원 • 하노이 한인 상공회의소 협력 협약(MOU) 후속조치 •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협력 협약(MOU) 후속조치 • 도-무궁화유통 농수산물 수출 협력 협약(MOU) • 도내 대학 내 베트남어학과 개설 제안 • 도 교육청 추진 해외 연수 국가에 동남아지역 포함 논의 • 도내 시군과 박장성-시군 교류지역 매칭 • 전북-서부수무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하반기) • 술라웨시 주지사 일행 스마트관 시찰 등 전북방문 • 새만금 한글학당 서부 수마트라주에 개설 연내 추진 • 해외 공연시 공연 횟수를 늘려 현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정 검토 - 동남아 국외출장(213~19.) 후 도내 업체 해외진출 기반 마련, 동남아 관광건과가 있었으니 소관부사에서는 후속조차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차하기 비합	소관부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 15대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연도별 로드맵 발표('23.2.20/비상경제장관회의) 3대 분야
		(수시배정 해제 요청대상) -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5억, 임실) -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2억, 익산) -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2억, 전주) - 전주육상경기장(27억, 기금: 지출 전 사전협의) -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5.1억, 남원) ○ 국가예산 수시배정 해제조치 노력 - 수시배정 사업을 확인, 사전절차 이행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배정 예산이 상반기 중에 정될 수 있도록 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공조하여 실질적으로 사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관: 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정책과, 탄소바이오산업과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 (조합장 선거) 3. 8.(수) 07:00 ~ 17:00 - 전국 1,347개 조합(농·축협 1,115, 수협 90, 산림조합 142) * 선관위 위탁 - 전북 111개 조합(농·축협 94, 수협 4, 산림조합 13) * 후보자 등록(~2.22.), 선거인명부 확정(2.26.), 투표안내문 발송(2.28.) ○ (주요고발) 기부행위(금품수수), 호별 방문(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립 철저 - 38.(수)에 치러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일까지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작: 강 확립 필요 - 특히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 관련된 부사장들은 부서원들에게 SNS 선거 홍보 금지 등 공작자의 선거법 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람.
		 ○ 중앙 공모사업 준비 철저 -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도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공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된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공모사업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대하기 바람. (주관: 정책기획관/협조: 전 실·국

익산시 고시 제2023-4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의 산 시 장 2023년 3월 3일

① 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 결정 현황

■ 공원 결정 조서

7.19	도면표시	고이머	시설의	0) =1		면적(m')		최 초	יוט יי
구분	번 호	공원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1	신흥공원	근린공원	신흥동, 어양동 일원	722,164	-	722,164	건설10 (91.01.19)	

[※]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신흥공원): 674,890m' → 722,164m' 증)47,274m' (전라북도 고시 제2020-195호, 20.06.26)

② 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조서: "변경"

		부지면적(m')			건축면	적(m²)			7.2111	
시설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먼적		구성비	비고
	ארוי	12/3	也多千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74,890	증)47,274	722,164	12,057	증)30	12,087	23,063	증)30	23,093	100.0	
공원시설 소계	189,390	증)443	189,833	-	-	-	-	-	-	26.3	
교통시설	45,116	증)413	45,529	-	-	-	-	-	-	6.2	
조경시설	7,195	-	7,195	-	ı	-	_	-	_	1.0	
휴양시설	497	-	497	-	ı	-	-	-	-	0.1	
운동시설	28,276	-	28,276	32	1	32	32	-	32	3.9	
유희시설	1,160	-	1,160	-	1	-	_	-	_	0.2	
교양시설	30,846	-	30,846	8,382	-	8,382	18,968	-	18,968	4.3	
편익시설	16,698	증)30	16,728	711	증)30	741	1,001	증)30	1,031	2.3	
관리시설	23	-	23	-	ı	-	_	-	_	0.1	
녹 지	485,500	증)46,831	532,331	_	ı	-	_	_	-	73.7	
수도시설	59,579	-	59,579	2,932	ı	2,932	3,062	-	3,062	8.3	

[※]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신흥공원): 674,890㎡ → 722,164㎡ 증)47,274㎡ (전라북도 고시 제2020-195호, 20.06.26)

[₩] 교통시설(보도, 산책로 등) 현황 반영 및 면적 오차 정정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 조서 :"변경"

	변호	시설명										
구분				1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	Ž	 총계	674,890	증)47,274	722,164	12,057	증)30	12,087	23,063	증)30	23,093	
	공원시]설 소계	189,390	증)443	189,833	_	_	_	_	_	-	26.3%
	소계		45,116	증)413	45,529	_	_	_	_	_	_	
H	_	도로	17,732	증)583	18,315	_	_	_	_	_	_	
ŀ	_	보도	8,218	강)583	7,635	_	_	_	_	_	_	
H	_	산책로	7,884	증)218	8,102	_	_	_	_	_	_	
교통	1-1	중앙광장	8,315	-	8,315	_	_	-	-	_	-	
시설	1-2	진입광장	1,787	-	1,787	-	_	_	_	_	-	
1 2	1-3	광장	580	_	580	_	_	_	_	_	_	
ŀ	1-4	진입광장	430	-	430	_	_	_	_	_	_	
ŀ	1-5	진입광장	275	_	275		_	_	_	_	_	
ŀ	1-7	광장	90	_	90	_	_	_	_	_	_	
	- 1	소계	7,195	-	7,195	-	-	-	-	-	_	
ŀ	2-1	연못	4,280	_	4,280	_	_	_	_	_	_	
ŀ	2-2	폭포	1,100	_	1,100	_	_	_	_	_	_	
조경	2-3	수로	1,650	_	1,650	_	_	_	-	_	_	
시설	2-4	그늘시렁	54	_	54	_	_	_	_	_	_	
f	2-5	그늘시렁	36	-	36	_		_	-	-	-	
f	2-6	그늘시렁	75	-	75	_	-	_	-	-	-	
		소계	497	-	497	_	_	_	-	-	-	
휴양	3-1	 팔각정자	397	-	397	_	-	_	_	-	-	
시설	3-2	등의자	100	-	100	_	-	_	-	-	-	
		소계	28,276	-	28,276	32	-	32	32	-	32	
Ī	4-1	축구장	13,470	-	13,470	-	-	-	-	-	-	
<u>, </u>	4-2	테니스장	8,591	-	8,591	32	-	32	32	-	32	
운동	4-3	체력단련장	1,650	-	1,650	-	-	_	-	-	-	
시설	4-4	다목적운동장	1,740	-	1,740		-	-	-	-	-	
Ī	4-5	농구장1	2,040	-	2,040		-	-	-	-	-	
Ī	4-6	농구장2	785	-	785	-	-	-	-	-	-	
Λ = l		소계	1,160	-	1,160	-	-	-	-	-	-	
유희	5-1	놀이터	900	-	900	-	-	-	-	-	-	
시설	5-2	놀이터	260	-	260	-	-	-	-	-	-	
		소계	30,846	-	30,846	8,382	-	8,382	18,968	-	18,968	
교양	6-1	문화원	3,972	-	3,972	1,299	-	1,299	2,380	1	2,380	
교장 시설	6-2	청소년수련관	6,848	-	6,848	1,354	-	1,354	3,625	-	3,625	
^11년	6-3	예술의전당	19,882	-	19,882	5,729	-	5,729	12,963	-	12,963	
	6-4	공연장	144	-	144	_	-	-	-	-	-	
		소계	16,698	증)30	16,728	711	증)30	741	1,001	증)30	1,031	
Ī	7-1	주차장	2,060	-	2,060	-	-	-	-	-	-	
Ī	7-2	주차장	2,360	-	2,360	-	-	-	-	-	-	
Ī	7-3	주차장	1,020	-	1,020	-	-	-	-	-	-	
1	7-4	주차장	523	-	523	-	-	-	-	-	-	
[7-5	주차장	2,750	-	2,750	-	-	-	-	-	-	
	7-6	주차장	1,973	-	1,973	-	-	-	-	-	-	
편익	7-7	전망대	1,000	-	1,000	100	-	100	100	-	100	
신크 시설	7-8	화장실	500	-	500	50	-	50	50	-	50	
15	7-9	화장실	114	-	114	114	-	114	114	-	114	
	7-10	화장실	58	-	58	58	-	58	58	-	58	
[7-11	여성전용화장실	100	-	100	84	-	84	84	-	84	
[7-12	주차장	1,331	-	1,331	_	-	_	-	-	-	
	7-13	휴게음식점	354	-	354	305	-	305	595	-	595	
	7-14	주차장	2,545	-	2,545	-	-	-	-	-	-	
	7-15	휴게음식점	10	-	10	_	-	-	_	-	-	
	7-16	화장실	_	증)30	30	-	증)30	30	-	증)30	30	화장실 신

		시설명		보기대기/i/								
구분	번호		부지면적(m²)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소계		23	-	23	-	-	-	-	-	-	
관리 시설	8-1	관정및펌프실	23	-	23	-	-	-	-	-	1	
기타		소계	485,500	증)46,831	532,331	-	-	-	-	-	-	
시설	-	녹지	485,500	증)46,831	532,331	-	-	-	-	-	-	
수도		소계		-	59,579	2,932	-	2,932	3,062	-	3,062	
시설	10-1	정수장	59,579	-	59,579	2,932	-	2,932	3,062	-	3,062	

3.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도로 총괄표

▮ 도로 총괄조서

			합계		1류				2류			3류	
Ŧ	²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면적 노선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工包丁	(m)	(m²)	工也干	(m)	(m²)	工位工	(m)	(m²)	工位十	(m)	(m²)
	기정	40	6,479	33,736	1	330	12,570	2	271	2,890	39	5,878	18,276
합계	변경	-	감)291	증)316	-	-	증)98	-	-	-	ı	감)291	증)218
	변경후	40	6,188	34,052	1	330	12,668	2	271	2,890	37	5,587	18,494
	기정	1	330	12,570	1	330	12,570	-	-	-	-	-	-
대로	변경	-	-	증)98	-	-	증)98	-	-	-	-	-	-
	변경후	1	330	12,668	1	330	12,668	-	-	-	ì	_	-
	기정	3	267	3,550	-	-	_	1	95	1,480	2	172	2,070
중로	변경	-	-	-	-	-	-	_	-	-	_	-	-
	변경후	3	267	3,550	-	-	-	1	95	1,480	2	172	2,070
	기정	36	5,882	17,616	-	-	-	1	176	1,410	35	5,706	16,206
소로	변경	_	감)291	증)218	_	-	-	_	-	_	-	감)291	증)218
	변경후	36	5,882	17,834	-	_	_	1	176	1,410	35	5,415	16,424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ਜ	모				연장(m	1)		면적(m	')		기점	ą	·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형태	비고
			합 7	1		6,479	감)291	6,188	33,736	증)316	34,052	-	-	-	-	-	-
		디	로(소:	계)		330	-	330	12,570	증)98	12,668	-	-	-	-	-	-
변경	대로	1	1	35	간선도로	330	-	330	12,570	증)98	12,668	어양동45-8	어양동45-12 전	어양동36-1	신흥동 398-3 도	-	도로
		중	로(소)	41)		267	-	267	3,550	-	3,550	-	-	-	-	-	-
변경	중로	2	1	15	진입로	95	-	95	1,480	-	1,480	어양동 산102-1	어양동 산102-13 도	어양동 50-11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중로	3	1	15	진입로	152	-	152	1,830	-	1,830	어양동 47-4	어양동 52 체	어양동 52-6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중로	3	2	12	시설연결로	20	-	20	240	-	240	어양동 54-12	어양동 52 체	어양동 54-12	어양동 52 체	-	보도
		소	로(소)	계)		5,882	감)291	5,591	17,616	증)218	17,834	-	-	-	-	-	-
변경	소로	2	1	8	진입로	176	-	176	1,410	-	1,410	어양동 47-9	어양동 52 체	어양동 52-6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1	6	진입로	68	-	68	410	-	410	어양동 45-1	어양동 52 체	어양동 47-4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	6	진입로	21	-	21	130	-	130	어양동 43-6	어양동 45-13 도	어양동 43-6	어양동 43-11 체	-	보도
변경	소로	3	3	6	시설연결로	10	-	10	60	-	60	어양동 52-25	어양동 51 체	어양동 48-5	어양동 51 체	-	보도
변경	소로	3	4	6	시설연결로	46	-	46	280	-	280	어양동 산94-1	어양동 53-16 임	어양동 43-2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5	5	시설연결로	13	-	13	70	-	70	어양동 50-8	어양동 50-22 유	어양동 50-6	어양동 50-6 체	-	보도

		규	모				연장(m)		면적(㎡	')	;	기점	ą	점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형태	비고
변경	소로	3	6	4	시설연결로	15	-	15	60	-	60	어양동 43-8	어양동 45-13 도	어양동 43-2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7	4	시설연결로	15	-	15	60	1	60	어양동 43-10	어양동 45-13 도	어양동 43-2	어양동 43-1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8	4	시설연결로	78	-	78	315	1	315	어양동 44	어양동 52 체	어양동 43-2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9	6	진입로	80	-	80	503	-	503	어양동 65-13	어양동 735 대	어양동 54-9	어양동 52 체	-	도로
변경	소로	3	11	3	시설연결로	20	-	20	60	1	60	어양동 54-12	어양동 52 체	어양동 100-5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12	3	시설연결로	133	-	133	400	-	400	어양동 52-2	어양동 52 체	어양동 산88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13	3	산책로	163	-	163	490	1	490	어양동 50-13	어양동 52 체	어양동 54-9	어양동 52 체	-	산책로
변경	소로	3	14	3	산책로	454	-	454	1,456	1	1,456	어양동 50-11	어양동 54-6	어양동 산91-9	어양동 산91-7 임	-	산책로
변경	소로	3	15	3	산책로	330	-	330	990	-	990	어양동 산91-9	어양동 53-16 임	어양동 54-12	어양동 54-6 대	-	산책로
변경	소로	3	16	3	시설연걸로	236	-	236	710	-	710	어양동 43-2	어양동 43-11 체	어양동 54-13	어양동 54-6 대	-	도로
변경	소로	3	17	2	산책로	390	-	390	780	-	780	어양동 50-8	어양동 50-22 유	어양동 50-6	어양동 50-6 체	-	산책로
변경	소로	3	18	2	시설연결로	25	-	25	50	-	50	어양동 50-11	어양동 50-14 체	어양동 50-15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2	2	시설연결로	180	-	180	360	-	360	어양동 47-9	어양동 45-3 전	어양동 54-3	어양동 5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3	2	시설연결로	100	-	100	200	-	200	어양동 45-6	어양동 52 체	어양동 43-6	어양동 45-13 도	-	보도
변경	소로	3	24	2	시설연결로	85	-	85	170	-	170	어양동 41-4	어양동 45-14 도	어양동 43-10	어양동 43-12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5	2	산책로	252	-	252	504	-	504	신흥동 산25-12	신흥동 산25-3 도	신흥동 산13-2	신흥동 산15-3 임	-	산책로
변경	소로	3	26	2	산책로	588	-	588	1,176	-	1,176	신흥동 산17-1	신흥동 산15-3 임	신흥동 204	신흥동 210-1 전	-	산책로
변경	소로	3	27	1.5	시설연결로	20	-	20	30	-	30	어양동 48-6	어양동 48-6 체	어양동 48-1	어양동 48-1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8	1.5	시설연결로	13	-	13	20	1	20	어양동 51-1	어양동 51 체	어양동 51-1	어양동 51 체	-	보도
변경	소로	3	29	2	산책로	420	증)28	448	840	증)63	903	신흥동 400-2	신흥동 400-7	신흥동 산13-2	신흥동 산13-2	-	산책로
변경	소로	3	30	1.8	산책로	135	증)47	182	246	증)167	413	신흥동 산22-1	어양동 45-8 전	신흥동 산25-13	신흥동 400-11 전	-	산책로
변경	소로	3	31	1.8	산책로	710	감)366	344	713	감)12	701	신흥동 45-8 전	신흥동 400-11 전	신흥동 산22-1	신흥동 산13-2	-	산책로
변경	소로	3	32	7	시설연결로	42	-	42	323	1	323	신흥동 산38-1	신흥동 산38-1 수	신흥동 470	신흥동 470 수	-	도로
변경	소로	3	33	3	시설연결로	74	-	74	233	-	233	신흥동 470	신흥동 470 수	신흥동 산38-1	신흥동 산38-1 수	-	도로
변경	소로	3	34	4	시설연결로	187	-	187	671	-	671	신흥동 산38-1	신흥동 산38-1 수	신흥동 210-1	신흥동 210-1 전	-	도로
변경	소로	3	35	5	시설연결로	455	-	455	2,134	-	2,134	신흥동 산38-1	신흥동 산38-1 수	신흥동 산34	신흥동 산34 임	-	도로
변경	소로	3	36	3	시설연결로	76	-	76	209	-	209	신흥동 산34	신흥동 산34 임	신흥동 산38-1	신흥동 산38-1 수	-	도로
변경	소로	3	37	6	시설연결로	70	-	70	501	-	501	신흥동 62 체	어양동 54-6 대	신흥동 54-7	어양동 52 체	-	도로
변경	소로	3	38	3	시설연결로	136	-	136	689	-	689	신흥동 63 체	어양동 52 체	신흥동 54-7	어양동 52 체	-	산책로
변경	소로	3	39	5~6	시설연결로	66	-	66	363	-	363	신흥동 43-12 체	어양동 43-11 체	신흥동 53-17 임	어양동 53-17 대	-	도로

4. 결정사유

- 1)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20-195호, 20.06.26) 사항 반영
- 2) 축제 등 행사시 공원이용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3) 교통시설(보도, 산책로 등) 현황 반영 및 면적 오차 정정
- 4) 공원 내 도로의 기점 및 종점 정정
-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끝.

정읍시 고시 제2023-34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3월 3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동 13-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면적 : 1.665 m²

나. 규모 : 도로개설(중로2-6호선) B=15m, L=114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익산시 익산대로4길 31, 801호

나. 성 명 :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익일 ~ 2023.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 7. 관계도서: "실음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1	정읍	상	13-5	답	477	445			정읍시				
2	"	"	14-1	답	89	89			정읍시				
3	"	"	22-7	답	31	31			정읍시				
4	"	"	23-3	답	53	53			정읍시				
5	"	"	24-5	전	45	45			정읍시				
6	"	"	26-6	답	106	106			국(기획재정부)				
7	"	"	26-9	전	217	217			정읍시				
8	"	"	27-6	전	5	5			정읍시				
9	"	"	28-9	전	472	472			정읍시				
10	"	"	719-165	구	119	119			국(기획재정부)				
11	"	"	731-19	도로	25	25			국(건설부)				
12	"	"	731-26	도로	1,232	58			국(국토해양부)				
	계		12필지		2,871	1,665							

김제시 고시 제2023-20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금구 중로2-4, 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같은법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3월 3일

I.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1	면 적(mi	·)	치호	
구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0	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일원	30,669	증)2	30,671	김제시고시 제2021-126호 (21.10.21.)	주택건 설사업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m²)	변 경 사 유
신설	10	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일원	30,671	기반시설(중로2-4 및 소로1-8)의 분할측량 결과 반 영에 의한 구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Ť	구모			스러 기)) ()	주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4	16	집산 도로	35	소로 1-1 금구리 318	소로 1-8 금구리 358-2	일반 도로		김제시고시 제2021-126호 (21.10.21.)	주택건 설사업
기정	소로	1	8	10	집산 도로	386	중로 2-1 금구리 301	중로 2-4 금구리 318	일반 도로		김제시고시 제2021-126호 (21.10.21.)	주택건 설사업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²)		획지	비고
<u> </u>	//무면호 	인석(III <i>)</i>	위치	면적 (m²)	H <u>11</u>
10	Δ.	20.671	1	25,641	공동주택용지
10	A	30,671	2	5,030	도로용지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	구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0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0	A-①	건	폐 율	- 15% 이하
		용	적 률	- 215% াক
			৹	- 28층 이하

3. 기반시설 분담계획 "변경"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완화차로 설치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기반시 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공공에 대한 이익 증진도모
- 도로용지내 사유지는 관리청에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Ę	년적(m²)					
구분	사업내용	폭원	연장	합	거	국유	٥ <u>-</u> حا		공유지		사	٥ <u>-</u> تا	비고
Tゼ	사업대중	(m)	(m)	H	세	47	T^	김제시	전라	북도	\^F1	下^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실제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052	6,054	184	72	5	662	664	5,201	5,313	
① 소로1-8	개설	10	386	3,993	3,995	134	53	-	179	181	3,680	3,761	
② 중로2-4	개설	16	35	557	557	43	12	5	-	ı	509	540	
③ 중로2-1호선변 완화차로	포장	3.25		478	478	-	-	ı	478	478	-	-	
④ 북측 일반도로	토지제공	-	-	74	74	-	-	-	5	5	69	69	구역외
⑤ 구거대체시설용지	구거설치	-	_	950	950	7	7	_	_	_	943	943	구역외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이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인가내용을 준수함

Ⅱ.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Ⅲ.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4, 소로1-8호선)

나. 사업의 명칭 :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변경"

	ਜ	모		어기.	위	치	면	.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당초	변경	비고
					합	계	4,550	4,552	
중로	2	4	16	35	소로 1-1 금구리 318	소로1-8 금구리 358-2	557	557	
소로	1	8	10	386	중로 2-1 금구리 301	중로 2-4 금구리 318	3,993	3,99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양선근

나.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당 초 : 2021. 10. 21. ~ 2024. 09. 30.

나. 변 경 : 2021. 10. 21. ~ 2025. 0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붙임
- 7. 관계도서(도면): 게재생략. 끝.

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금구면 금구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빈오	시 빈	시작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미끄
	합 계		4,552	4,552					
1	301-1	도로	108	108	전라북도				
2	308-4	답	73	73	전라북도				
3	308-6	답	56	56	윤장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66-3			
4	310-13	구거	25	25	한국농어촌공사				
5	317-12	전	478	478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6	317-28	도로	10	10	국(건설부)				
7	317-39	도로	1	1	김제시				
8	317-41	도로	1	1	국(건설부) 남전주IC				
9	318-3	답	949	949	지역주택조합 남전주IC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0	318-4	답	31	31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1	320-2	답	2	2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2	320-3	답	125	12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3	321	답	103	103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4	322-24	답	716	71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5	323-1	답	75	7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6	323-2	답	1	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7	323-3	답	1	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8	324	답	742	742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9	324-7	답	20	20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0	325-2	답	565	565	윤창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19번길 8, 106동 1408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 지상권
21	326-1	답	294	294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2	326-2	답	6	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3	358-154	도로	4	4	김제시				
24	358-155	도로	1	1	국(건설부)				
25	679-33	도로	16	1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6	679-35	도로	65	6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7	679-37	도로	31	3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8	683-1	구거	53	53	농림축산식품부				

○ 중로 2-4

(금구면 금구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	우권이외의 권리자	비
빈오	시 빈	시축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합 계		557	557					
1	317-12	전	478	478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	317-28	도로	10	10	국(건설부)				
3	317-39	도로	1	1	김제시				
4	317-41	도로	1	1	국(건설부)				
5	318-4	답	31	3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6	358-154	도로	4	4	김제시				
7	358-155	도로	1	1	국(건설부)				
8	679-37	도로	31	3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 소로 1-8

(금구면 금구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합 계			3,995	3,995					
1	301	도로	108	108	전라북도				
2	308-4	답	73	73	전라북도				
3	308-6	답	56	56	윤장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66-3			
4	310-13	구거	25	25	한국농어촌공사				
5	318-3	讪	949	949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6	320-2	꺕	2	2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7	320-3	답	125	12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8	321	땁	103	103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9	322-24	답	716	71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0	323-1	답	75	7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1	323-2	山	1	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2	323-3	讪	1	1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3	324	슙	742	742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4	324-7	답	20	20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5	325-2	답	565	565	윤창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19번길 8, 106동 1408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근저당 지상권
16	326-1	답	294	294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7	326-2	늅	6	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8	679-33	도로	16	16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19	679-35	도로	65	65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김제시 금구면 봉두4길 47,3층			
20	683-1	구거	53	53	농림축산식품부				

완주군 공고 제2023-424호

완주 군계획시설(고산제2문화공원: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사업 공사완료 공고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고산제2문화공원)사업인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 완 주 군 수 2023년 3월 3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문화공원:고산제2문화공원)사업
- 명 칭 :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신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3,256m²
- 건축규모 : 건축연면적 A=993.6㎡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완주군수(재난안전과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21. 09. 09. ~ 2023. 02. 08.
- 6. 관계도서: 게재생략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3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등록하고자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7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제 기 공 인 공인 인영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교육혁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2023.3.1.자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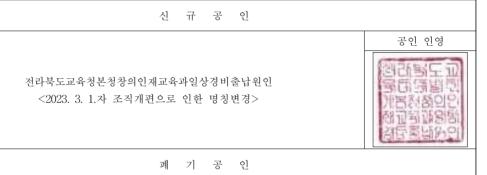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7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등록 및 폐기 내역



전라북도교육청본청미래인재과일상경비출납원인 <2023. 3.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7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등록 및 폐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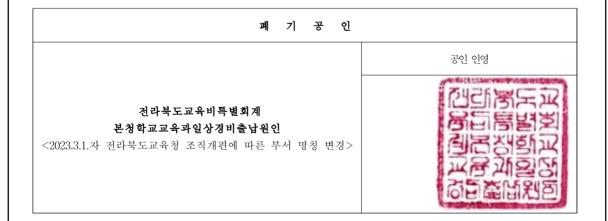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등록하고자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7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7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7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등록 내역

신 규 공 인
공인 인영
전라북도교육청본청전북교육인권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립에 따른 일상경비출납원
공인 조각>

제2886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88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등록하고자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2월 28일

- 1. 사용개시일: 2023년 3월 1일
- 2. 공인 등록 내역

김제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 송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과태료 본부 과처분(독촉)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 제 소 방 서 장 2023년 2월 28일

1. 대 상 자

가. 성 명: 김민지(생년월일: 660311-2*****)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12-20(원천동)

- 2. 위반내용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미신고
- 3. 위반법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 4. 부과금액: 과태료 금 2,084,000원(금 이백팔만사천원) *가산금 포함
- 5. 부과연월일 : 2023, 2, 28.
- 6. 납부기한 : 2023. 3. 27.
- 7. 납부방법 : 김제소방서 수입금출납원(전북은행 1013-01-3533103)
- 8.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사항 :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40-4245)